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04월 0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김**	김** 1987-01-07	강원도 속초시 영랑로1길	무단전출
송**	송** 1943-08-28	강원도 속초시 번영로	무단전출
엄**	엄** 1962-01-05	강원도 속초시 장성천길	무단전출
엄**	엄** 1993-03-16	강원도 속초시 장성천길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김 희 준 문의전화 : 033-631-1401)

2015년 04월 02일

영랑동장 인

